

청 원 의 결 서 안

1. 건 명 : 지하철 차량 기지창 부지 철거민 집단 이주주택 건립의 건

2. 청 원 인 : 사하구 신평동 452번지 김득조의 81명

3.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 김청일의원, 1991. 12. 6

4. 청원요지

-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로 인하여 을숙도, 일용도, 시온섬등지에서 출입 경작을 하던 일부 주민 82세대가 주거와 생업을 함께 잃고 부산시의 알선으로 신평동 452번지 지하철 차량기 지창 예정부지에 천막(88년6월이후부터 스텔트로 무단건축)을 치고 기거하고 있던중
- '94년 지하철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차량기지창 건설이 불가피하므로 타곳으로 집단이주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주겠다는 사하구청장의 약속을 받고 자진 철거한 후 일시 거소로 사하구내 및 인근지역에 산재하여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며
- 이와 동시에 집단이주를 위한 주택지 후보지를 물색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다세대 주택을 건립키 위해서는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허가 사무처리 지침과는 부합되지 않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의회의 협조를 요망함.

5. 의결내용

- 위 청원인들이 대부분 을숙도, 일용도, 시온섬의 출입 경작자들로서 낙동강 하구둑 매립 건 설공사로 인하여 생업터전과 주거지를 잃고 당시 부산시에서 주선하여 천막촌(88년6월이후 부터 스텔트)에서 기거하다가 '94년 지하철 개통을 위한 차량기지창 건설을 위해 또다시 철거되어져야 하는 입장과
- 청원인들의 주택철거시, 추후 이주 주택건립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는 구 청관계관의 말을 신뢰하고 자진 철거한점.
- 또한 본청원내용이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점
- 그리고,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이로인한 집단행동으로 장기간 동안 구행정력의 손실등이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 위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12. 16

부산직할시 사하구 의회